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I.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II.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 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III.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7.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8.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IV. 종합 의견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기재요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